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및 대체형벌> 연구

2020년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김대근, 이덕인, 권지혜)

- 2019년 <사형 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박형민, 김대근)의 후속 연구
- 2019년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 정립 방안>(김대근, 홍가혜)과 대칭적인 성격

2. 사형의 정당성

사형의 정당성 1 : 형벌의 목적

- 형벌의 목적: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응보) '동시에', 앞으로 그 범죄자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일반예방과 특별예방)
- 응보만을 위한 형벌은-예방의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능하고 부당. "형벌은 사적 복수보다 경미한 수단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정당화"되는 것이다"(이상돈, <형법강론>).

사형의 정당성 2

:'생명을 박탈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명백한 경우'

•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때로 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소중한 가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전제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를 파괴하는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사형제도가 선택된다고함

2. 사형의 정당성

사형의 정당성 2

- :'생명을 박탈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명백한 경우'
- '생명을 박탈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형벌은 사적 복수보다 경미한 수단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화 된다는 점에서 형벌로서 사형은 '적어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에 국한 되어야함.
- 이 경우에도 베카리아(Beccaria)가 강조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조건이 더 필요.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 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이다...(중략)...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이다. 바로 그 쟁점은 사형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입증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점.

3. 사형의 제도적 효과

사형의 제도적 효과 1

• "사형제가 사형수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생명권을 박탈하여 공동체와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키고, 회복 불가능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새삼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존중은 범죄피해자에게도 요청되는 것이기에 사형제 폐지의 논거로만 온전히 쓰일 수 없다. 포렌식을 통해 정밀해진 수사와 증거기반 재판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물론 여전히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형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프레시안, 2019.08.05. 김대근, '묵혀둔 숙제' 사형은 필요한 형벌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판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가 끊임없이 발생함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던 윤모씨 => 2020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

3. 사형의 제도적 효과

사형의 제도적 효과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판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가 끊임없이 발생함

1993년 이웃 여성 데브라 리즈(26세)를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레딜 리는 재판이시작된 뒤부터 죽기 직전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2017년 4월 20일 사형이 집행

- ⇒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 (2021.04.)
- 2017년 리의 사형집행이 있던 때에 아칸소주가 사형집행용 약물(미다졸람) 공급의 계약 종료일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집행을 서둘렀다는 주장
- "내 마지막 말은 언제나,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나는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 (BBC와의 인터뷰)

3. 사형의 제도적 효과

사형의 제도적 효과 2

- 사형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없음: 일부 제한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흉악범죄가 감소했다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통계는 없음
- 범죄자는 사형을 고려(계산)하면서 범죄를 저지를까: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격정 범죄)와 계획적 내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계획범 내지 고의범) 두가지를 상정해보면, 전자의 경우는 법정 최고형에 대한 계산은 안중에 없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기꺼이 결과를 감수하거나 무시했을 것.
- 즉, 사형을 통해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사형이 집행된 자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거나 예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의 효과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음

· 4. 사형제의 현실

사형제의 현실 1 – 2021년 5월 현재 사형제 관련 동향

- 2021년 1월 29일, 사형확정자 중 1인이 지병으로 사망.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형확정자는 총 59명(민간인 55명, 군인 4명)
- 미국에서 사형을 두 번째로 많이 집행하는 버지니아 주가 2021년 3월 24일 사형제를 폐지. 이로써 미국에서 사형이 폐지된 23번째 주가 됨
- 2020년 11월 17일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던져서 동 결의가 표결 채택

사형제의 현실 2 – 법제와 법집행 (2020. 10.)

• 현재「형법」을 비롯한 25개의 법률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조문)는 총 11개

「형법」제93조(여적),「군형법」제5조(반란)의2호,「군형법」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군형법」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군형법」제13조(간첩)*,「군형법」제18조(불법 전투 개시),「군형법」제19조(불법 전투 계속),「군형법」제22조(항복),「군형법」제23조(부대 인솔 도피),「군형법」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군형법」제84조(전지 강간)

- 사형확정자의 처우와 집행을 규정한 법률은 총 2개(「형집행법」, 「군형집행법」), 사형의 선고 및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1개(「형사소송법)」
- 사실상 사형폐지국: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을 집행. 마지막 사형 집행후(1998년 이후) 사망한 사형수는 12명으로, 5명은 자살을 선택했고 7명은 질병으로 사망

「군형법」제13조(간첩)*: 군형법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형제의 현실 3 – 우리나라 사형집행 추이

- 1964년부터 1979년 사이의 약 16년 동안 42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91명에게 사형을 집행
- 1980년과 1997년의 약 18년 동안에는 425명(전두환 정부 188명, 노태우 정부 129명, 김영삼 정부 108명) 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66명에게 사형을 집행
- 1998년부터 2018년의 약 20년 사이에는 12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음

사형제의 현실 4 – 여론의 추이

- 한국갤럽이 사형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한 1994년에는 찬성 70%, 반대 20%로 찬성이 압도적. 10년 이 지난 2003년에는 찬성 52%, 반대가 40%로 격차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듬해인 2004년 유영철 사건 때는 찬성 66%로 다시 증가. 이후 2012년에는 찬성 79%, 반대 16%로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사형제 유지 의견이 대폭 감소하여 31.9%, 사형제도 폐지 의견은 66.9%로 크게 증가=> 국민은 ①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② 범죄 억제 및 응보라는 형벌제도의 목적성의 측면에서 사형제도가 갖는 효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형벌이 등장할 경우 사형폐지를 지지하기도 함

사형제의 현실 5 – 사법 판단 동향

• 헌법재판소 결정 추이: 1989년 사형확정자들이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이는 각하. 이후 1995년, 2008년에 각각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1996. 11. 28. 95헌바1), 그리고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2010. 2. 25. 2008헌가23)이 제기=> 95헌바1 결정에서는 7대 2, 2008헌가23 결정은 5대 4로 모두 합헌 결정. 2019년에 다시 헌법소원 제기 중.

「헌법」제110조 제4항의 문언상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형이 인간존엄에 반하거나 이상한 형벌로 평가되거나 과도한 것이 아니며, 생명권 역시「헌법」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형의 위하력을 무기의 자유형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도 사형제도의 존치에 합헌(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 대법원: 「헌법」제12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1.2.26. 90도2906.)

사형제의 현실 6 – 국제 비교 (2008. -> 2016. 10.)

-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사형제 전면 폐지]: 92개국->106개국
- 전쟁 중 저지르는 범죄 등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극단적 범죄를 제외한 폐지]: 10개국->7개국
-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책 또는 관습이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집행 폐지]: 36개국->29개국
- 특정 범죄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사형집행국]: 56개국

(1) 사형의 집행 (「형사소송법」)

-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벌의 집행자인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제464조)
- 이후 사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제465조), 사형의 집행을 명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제463조). 훈시규정
-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이 있다면 5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되어야 함(제466조).
-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을 한 경우라면 그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형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제465조제2항).

(2) 사형 집행의 정지 (「형사소송법」)

-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 이후 심신장애의 회복이나 출산 후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다시 형을 집행(제469조).
- 이때 검사는 사형수 심신상황조회결과 사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밟음

(3) 사형 집행의 절차 (「형집행법」)

-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제91조). 사형수가 구금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사형집행설비가 없다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설비가 있는 교정시설로 이송
- 원칙적으로 사형은 비공개로 집행되고, 예외적으로 법정참여자 이외에 의사와 종교인이 참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형법」제66조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의 집행을 규정

(4) 사형확정자의 개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사형확정자를 수용자, 수형자 혹은 미결수용자와 다른 구별된 개념으로 사용.
- o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 구「행형법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정식 명칭이 없어 사형수라는 단어로 통용되고는 했으나, 2007년 12월 21일 구「행형법」을「형집행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사형확정자"라는 개념을 사용

(5) 사형확정자의 지위와 처우

사형확정자의 수용

○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이 원칙. 다만, 자살방지, 교육 · 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음(형집행법 제89조)

미결수로서의 지위

○ 사형확정자는 교육이나 작업의 대상이 아니지만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부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형집행법 제90조). 현재 대전 교도소 및 광주 교도소에서 출역을 함.

구분수용 원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구분수용 등)

(5) 사형확정자의 지위와 처우

구분수용 원칙

- ①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용한다.
- 1. 교도소: 교도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구치소: 구치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 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④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 ※ ④항에 의하여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 153조 (작업) ②항의 규정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50 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하여 붉은 색이 아닌 일반 수용자와 같은 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업장에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위화감이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사형확정자를 수용하고 있는 일부 교도소에서 적용하고 있다.

18

(5) 사형확정자의 지위와 처우

전화 통화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음(형집행법 제156조)

(6) 일반 기결수 및 미결수와의 차이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그 실질은 기결수

기결수의 처우

○ 참관이 가능하고, 처우에 따라 접견 횟수 내지 전화통화를 달리할 수 있음. 교정 목적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반드시 받아야 함

미결수로서의 처우

○ 참관이 가능하고, 처우에 따라 접견 횟수 내지 전화통화를 달리할 수 있음. 교정 목적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반드시 받아야 함

차이점

○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참관할 수 없지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 다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받을 여지가 있을 뿐. 한편 기결수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미결수에 비해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에 있어서는 제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는 기결수와 같은 '처우급'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교정 성적에 따른 처우를 달리 받을 여지가 없다는 점.

20

수용자 지위에 따른 비교

	기결(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참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접견횟수	수 매일 1회 처우급에 따라 달리		월 4회	
전화통화	적용(4회~매일)	소장허가 시	월 3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	의무사항	신청에 따라	신청 없이도 가능	
작업부과	신청사항 아님	신청에 따라	신청에 따라	
시설의 설비 및 계호	S1~S4	일반경비시설(S3)에 준함	일반경비시설(S3) 또는 중경비시설(S4)에 준함	

2019년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연구

(1) 의의

-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20년이 넘기 때문에 장기 구금되어 있음.
- 구금이 장기화됨에 따른 사형확정자들의 삶과 교정 관리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함.
- 더 나아가 이들의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시금석이 됨.

(2) 연구의 방법 – 대상과 범위

- 1997년 12월 30일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 총 60명의 사형 확정자가 서울 구치소, 부산 구치소, 대전 교도소, 광주 교도소, 대구 교도소에 수용. 그 중 군 교도소 수용자 4명을 제외한 56명의 수용자 중에서 32명을 만나서 면접조사를 통해 그들의 삶과 생각을 기록.
 - ※ 2019년 7월 11일, 사형확정자 중 1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여 총 60명
- 모두 남성. 짧게는 5년간 수용된 사람부터 최장 26년째 수용된 사람이 있고, 2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대개 50, 60대.
- 서울구치소 6명, 부산구치소 3명, 대전교도소 7명, 광주교도소 10명, 대구교도소 6명을 각각 2회씩 면접.
-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과 내면에 깊이 침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칠 수 있는 한계 있지만, 경험이 많은 교도관과 교정위원(민간인)들과의 면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보완.

6. 2019년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연구

(3) 면접 내용

사형확정자

• 하루, 주중, 월간의 일상, 수용 환경, 다른 수용자와의 관계, 신앙과 믿음, 취미, 가족관계, 희노애락, 장래의 계획 등(1차). 나아가 사형제도 및 대체 형벌에 대한 생각, 범행 당시 형벌(특히 사형)에 대한 고려나 체포 내지 발각의 두려움, 수사 및 재판 과정의 가혹행위, 공소사실 내지 판결문에 대한 이의, 피해자에 대한 기억,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 등(2차)

교도관

○ 기관의 사형확정자 현황, 수용관리의 어려움, 사형확정자들의 심리적 특성, 교화처우의 목적과 가능성, 사회복귀교육의 필요성, 종교활동의 의의, 접견, 출역의 장단점,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향후 수용관리에 대한 전망

교정위원

● 경력과 활동 동기, 확정자들과의 주된 대화 내용(무엇을 힘들어하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보람있거나 후회했던 경험 등), 확정 직후(수용 초기) 힘든 상황 면담 경험과 감정적 변화,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등.

(1) 사형확정자에 대한 인구학적 통계 개관

○ 사형확정자 총 56인을 연령대로 나누어보면 40대에서 60대가 51인(91%)으로 대부분을 차지. 30대 2인, 20대 0인으로 청년층에 속하는 사형확정자의 비중(4%)은 매우 낮음=> 이는 범죄를 저지른 연령대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겠지만 수용 기간의 장기화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임

<사형확정자 연령별 현황>

연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원	56	0	2	16	24	11	3

※ 최연소자: 30세, 최고령자: 82세, 평균연령: 53.8세

※ 국적: 외국인 2명

(1) 사형확정자에 대한 인구학적 통계 개관

● 2020. 10. 31. 현재 사형확정자들의 평균 수용기간은 19년 4개월로 결코 짧지 않으며 대부분(55인, 98%)의 사형확정자들이 10년 이상 복역 중. 20년 이상 복역 중인 사형확정자가 32인(58%)

<사형확정자 연령별 현황>

수용 기간	계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5년 미만
인원	56	32	17	6	1	0

※ 평균 수용기간: 19년 4월

- 사형확정자들은 57%가 독거, 43%가 혼거 수용되고 있어 일반 수용자들보다 높은 비율로 독거 수용.
- 현재 56명의 사형확정자 중에서 출역을 하는 사람은 18명, 그리고 나머지는 출역을 하지 않음.출역을 하는 경우, 다른 수형자와 혼거
- ◆ 사형확정자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음. 각각 기독교 32인(57%), 천주교 13인(23%), 불교 9인(16%), 원불교 1인(2%), 기타 1인(2%)

(2) 사형확정자에 대한 확정 판결 빈도와 감형 현황, 도주기도 횟수

- 현재 생존한 사형확정자 중 90년대(1990.1.1. 1999.12.31.)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확정자의 수는 19인, 2000년대(2000.1.1. - 2009.12.31.)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확정자의 수는 34인
- 2002년부터는 사형확정 건수가 연간 최대 5건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 특히 2010.1.1 이후 사형확정 건수는 현재(2020.10.31.) 기준 3건으로 2000년대보다도 판결로서 사형을 선고하는 빈도가 크게 감소
- 한편, 1998년 이후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람은 총 19명. 그러나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후, 다시 감형되어 가석방된 경우는 없음
- 도주를 기도한 사형확정자의 수는 총 4인. 그 중 1인은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3인은 예비·음모 단계에서 발각

(3) 사형확정자의 범죄와 심신장애 항변 여부

-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죄목은 각각 살인(31건), 강도살인(20건), 성폭법위반(12건), 사체은닉(10건), 사체유기(9건), 특가법위반(9건) 살인미수(8건), 특수강도(8건), 절도(8건), 사체손괴(6건), 폭처법위반(5건), 사기(4건), 현주건조물방화(4건), 강도상해(4건), 강도살인미수(3건), 강도강간(3건), 존속살해(3건), 살인예비(2건), 특수강도(2건), 특수절도(2건), 대마관리법위반(2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1건), 존속살해예비(1건),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1건), 강 간 살 인 (1 건), 강 제 추 행 살 인 (1 건), 강 제 추 행 치 상 (1 건), 준 강 간 (1 건), 사체 오 욕 (1 건), 미성년자의제강간(1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1건), 현존건조물방화치사(1건), 일반건조물방화(1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1건), 강도예비(1건), 인질강도미수(1건), 강도교사(1건), 상해(1건), 폭행(1건), 감금치상(1건), 주거침입(1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1건), 범죄단체조직(1건), 공문서위조(1건) 순
- 심신장애를 사유로 항변한 사람의 수는 37인(전체 중 66%). 구체적인 항변 사유에 따라서는 정신질환 7인(19%), 음주 11인(30%), 항정신성의약품 2인(5%), 기타 17인(46%)

(4) 사형확정자의 가족 관계

- 부모와 연락을 취하는 경우 17건(30%), 배우자 및 자녀와 연락을 취하는 경우 13건(23%), 형제 등 기타 친인척과 연락을 취하는 경우 32건(57%), 친인척 외 친구 등과 연락을 취하는 경우 40건(71%)(중복집계)
- 가족·친지·친구 등과 모두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1인
- 친인척 외 타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족 및 친인척과 연락하지 않는 경우 12인(21%)
- 연락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는 4인(7%)

(5) 사형확정자 예산 관련

- 사형확정자에 대한 직접경비는 매년 소폭 증가(연간 220~250만원), 간접경비는 2017년까지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로는 증가
- 5년간 전체 비용 중 직접경비의 비율은 최소 9.1%(2016년)에서 최대 9.5%(2019년)을 오가며 9%대로 일관되게 유지

<최근 5년간 수용자 1인당 관리 비용>(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접경비	2,210천원	2,236천원	2,290천원	2,410천원	2,503천원
간접경비	22,167천원	21,312천원	21,904천원	22,923천원	24,321천원
계	24,337천원	23,548천원	24,194천원	25,333천원	26,824천원

(1) 방법론적 의의

미국

○ 연방 정부와 50개의 주 정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형 및 종신형 제도의 양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음 =>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형제 존폐의 거대한 실험장'

유럽

○ 유럽 인권보호 협약을 통해 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 =>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형 대체형벌의 거대한 실험장'

미국

ㅇ 개관

1600년대부터 사형을 집행한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수차례 폐지와 도입을 반복. 연방 대법원이 1972년 Furman v. Georgia 판결을 통해 사형제의 위헌을 선고하며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이 판결의 영향으로 각 주들은 새로운 사형제의 도입을 시도. 그러나 1976년 연방 대법원이 Gregg v. Georgia 판결을 통해 제시한 사형제의 합헌적 운영 형태를 적극 반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연방정부와 50개의 주 중에 28개의 주에서 사형제가 존치

○ 종신형 운영 실태

- ① 미국에서 종신형 수형자는 2016년 기준 전체 수형자 9명당 1명에 육박할 만큼 종신형 제도가 활발히 운영 => 특히 엄벌주의적 형벌문화 속에서 사형제를 대체하는 형벌로서 수요가 증가
- ② 2020년 현재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가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를 의미하는 가석방 불가능 종신형을 운영 => 가석방 불가능 종신형은 교화 및 교정행정의 어려움, 사법절차적 권리 보장 미흡,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됨
- ③ 가석방 가능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복역기간 최소 15년이 지난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 그러나 가석방 제도 운영에 요청되는 체계성이 미흡하며, 엄벌주의 하에서 정치적 영향 등으로 가석방 가능 조건이 엄격해져 사실상 가석방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는 비판

유럽

ㅇ 개관

47개 유럽 평의회 회원국 가운데 종신형 제도가 없는 나라는 9개국. 나머지 38개국 중에서 15개국이 가석방불가능 종신형 운영(39.5%), 23개국은 가석방 가능 종신형 운영(60.5%). 2009년 이후부터 10여년의 사형집행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유럽평의회 소속의 어떤 회원국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음

○ 종신형 운영 실태

- ① 일부 국가에서는 종신형이 '평생'을 의미하는 요소를 담고 있지만, 대다수 국가들에서 종신형은 수형자가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구금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에 가석방 기준과 최저 복역 기간 및 가석방 이후의 부과처분은 국가별로 다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 인권 재판소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음
- ② 197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E 45): "인간존엄성에 맞는 행형의 요건에는 무기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다시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남겨 주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에 부족하며, 법치국가원칙은 더 나아가 무기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절차를 법률로 정할 것을 요청한다."

유럽

○ 종신형 운영 실태

- ③ 2013년 유럽 인권재판소 결정(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영국 국적의 Vinter, Bamber, Moore가 무기형이「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제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 " 비록 필수 심사가 형의 복역에 따라 필수적으로 예측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기수들은 그가 그의 구금에 달린 법적 조건들이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제기할 수 있기 전까지 비정기형의 구금형을 복역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중략)...부과된 선고가 국내 법 하에 감형될 수 없는 경우 수감자가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언젠가에, 교화에 기초하여 그의 석방을 고려할 메커니즘이 도입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스스로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기수는 그의 복역의 발단에서, 그의 선고에 대한 심사가 언제 행해질 것인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건 하에 석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알 자격이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이 그러한 메커니즘이나 무기형의 심사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근거에서 제3조와의 양립 불가능성은 이미 구금 중의 단계에서가 아니라 무기형의 부과단계에서 문제된다."

유럽

○ 종신형 운영 실태

④ 2017년 유럽 인권재판소 결정(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영국 국적의 Mr Arthur Hutchinson이 그에게 부과된 무기형이「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제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동 법원은 "무기형은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으로도 감경 가능해야 하며, 이는 수감자의 석방에 대한 전망 및 심사의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함을 전제로 절대적 무기형이 이제 협약 제3조에 따라 감경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론을 도출

(1) 가석방 가능 종신형

- ▶ 사형 폐지 이후의 대체형벌의 형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가능한 이른바 상대적 종신형의 형태가 되어야 함
- 이에 ① 우리 현행법상의 무기징역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거나 ② 최저 복역기간을 상정한 형태의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을 설정하는 것이 대안
- 유럽의 경우, 최저의 기간을 12년에서 25년 사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보다 더 장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음=> 개별 국가의 형사정책과 행형정책에 위임된 문제

(2) 입법의 형태

-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동시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법률과 그 밖의 절차와 처우에 관한 사형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
- 최저복역 기간의 예시: ① 평균 기대수명과 잔여수명을 고려하는 방안과 ② 최저 복역기간을 법정하는 방안(ex. 25년)
- 특별법과 함께 가석방의 허용 여부는 권력분립의 원칙, 특히 사법 존중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함.

(3) 기존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

- ▶ 사형제가 폐지되고 무기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이 되면, 기존 사형확정의 선고는 무기징역형으로 바뀌어야함. ① 특별법의 형식으로 사형을 무기징역형으로 일률 감경하는 방안과 ② 특별법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통해서 무기징역형으로 바꾸는 방안
- ②가 ①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만, 권력분립에 대한 존중과 판결의 기속력을 고려할 때, 검사의 무기징역형의 구형과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형의 변경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 특별법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무기징역형으로 바꾸는 경우, 그 절차를 형사재심의 것을 준용할 여지 있음. 사형 폐지에 따른 형의 변경은「형사소송법」제420조 상의 재심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의 특별재심과 같은 입법을 참조할수 있을 것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제o조(특별재심) ① 사형 폐지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형사소송법」제420조 및 「군사법원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예시

법률 제 ((() () () 호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형벌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형의 폐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중 사형을 폐지한다.

제3조(가석방 등의 제한) 법원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범죄의 종류나 죄질, 정상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그 복역을 개시한 후 2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형법에 의한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의한 일반사면·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본다.

(4)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예시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재소 중 사망)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6조부터 제5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형확정자"를 "무기징역형확정자"로, "사형"을 "무기징역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를 "군미결수용자"로 한다.

제76조 중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군수형자"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사형확정자"를 "무기징역형확정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형확정자"를 각각 "무기징역 형확정자"로 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4)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예시

④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⑤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3조부터 제46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⑧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형확정자"를 "무기징역형확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형"을 각각 "무기징역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사형확정자"를 "무기징역형확정자"로 한다.

제88조 중 "사형확정자"를 "무기징역형확정자"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형확정자"를 각각 "무기징역형확정자"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사형확정자"를 "무기징역형확정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형확정자"를 각각 "무기징역형확정자"로 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감사합니다